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782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가.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1989. 9. 29.부터 현재까지 [redacted] 노원구 [redacted]동 700 지상에 연면적 2,655.36㎡의 [redacted](이하 '이 사건 [redacted]'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redacted] 설치일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redacted]를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세율(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천분의 2.5)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변전소를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인 1천분의 5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redacted]는 '지방세법 제111조 등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100분의 500"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중과 여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과 구별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천분의 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전소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redacted]가 설치된 198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redacted]를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1천분의 2.5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그 외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내에 설치된 다른 변전소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있는 [redacted]에 '공장용 건축물'에 관한 1천분의 5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지방세운영과는 위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비과세관행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공장용 건축물)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 · 가공 ·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는 전기업(제25호[1]) 등 공장의 종류에 포함되는 업종들을 규정하면서, 제29호[2] 본문에서는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 포함)'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되, 단서(이하 '이 사건 개정전 단서'라 한다)에서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이 사건 개정전 단서의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부분이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개정후 단서'라 하고, 이 사건 개정전 단서와 이 사건 개정후 단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단서'라 한다)로 개정되었다.

3) 전기업은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전신인 1996. 12. 31. 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8호 아목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는데, 그 제28호 단서에서는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6. 12. 31. 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관련 규정들은 그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 → 지방세법 111조

1) 2015. 7. 24.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전기업'은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2) 2015. 7. 24.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제28호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의2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③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6. 12. 31. 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7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나. 법 111조 제1항 제2호의 성격(중과세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

1) 이 사건에서 쟁점은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변전소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는 위 규정이 [별표 2] 제29호 단서의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먼저 위 규정의 성격을 살펴본다.

2)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들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것으로 차등과세를 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 제111조 제1항 나목은 [별표 2] 제29호 단서에서 정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이 아니다. 중과세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이다.

나) 피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정책적인 고려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1천분의 2.5 세율을 적용하는 '그 밖의 건축물'보다 중과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재산세 중과에 관한 규정이다.

3)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중과세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과세대상별로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는데,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6호). "중과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등에도 정의규정이 없으나 그 사전적 의미는 '보통 세금의 비율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표준세율"이란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법이 달리 정한 '기준이 되는 세율'을 의미할 뿐이고, 그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이 중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즉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여 '중과세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방세법 제146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인데, 제2호에서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2호 역시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1호와 비교할 때 '중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또한 소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고급오락장', '골프장' 등에 대한 세율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세율 자체에 차등을 두어 달리 규정하는 경우, 높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은 보통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과 비교할 때 '중과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며, 꼭 "100분의 200"등 규정형식을 취한 경우에만 이를 '중과세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없다.

②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중과하는 규정으로서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의 의미를 가지므로, 규정의 편의상 기준이 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반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그 자체로 표준세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굳이 같은 호 다목을 기준으로 "100분의 200"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1천분의 5"라는 표준세율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필요에 따라 규정형식을 달리한 것일 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같은 호 다목을 기준으로 할 때 2배의 중과세율에, 제2항의 경우 위 다목을 기준으로 할 때 5배의 중과세율에 각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중과세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 이 사건 [redacted]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토계획법이 정한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이 사건 변전소가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포함되므로, 지방세법 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1천분의 5의 재산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1천분의 2.5의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2) 위에서 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성격(중과세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규정의 개정경과와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전소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① 이 사건 개정후 단서가 인용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순차 위임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후 단서가 지칭하는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 개정전 단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인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4.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단서의 전신인 1996. 12. 31. 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8호에 전기업이 처음으로 규정되었을 당시의 관련 규정들에 대응하는 현행 규정들, 그리고 이 사건 개정전 단서는 이후 이 사건 개정후 단서로 개정됨으로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를 다시 인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서는 '지방세법 제111조'라고 규정하여 그 중 제1항을 배제하거나 그 중과세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지방세법 제111조 뒤에 열거된 '시행령 제110조'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규정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전 단서가 지칭하는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가 [별표 2]에서 정하는 업종 중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는 취지는 주거지역에 [별표 2]가 정하는 업종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그런데 위 [별표 2] 제29호 본문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업종, 즉 '가스업, 상수도업, 차량 정비 · 수리업, 연탄제조업, 얼음제조업, 인쇄업(뉴스통신사업), 지역난방사업, 전기업(변전소 및 송 · 배전소 포함)'의 경우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위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들의 경우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어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단서 조항은 다시, 위 업종 중에서도 '가스업, 상수도업, 차량 정비 · 수리업, 연탄제조업, 얼음제조업, 전기업(변전소 및 송 · 배전소 포함)'에 관하여는 주거지역에 연면적 500㎡ 이상 규모의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이를 공장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주거지역에 위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의 설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면적 500㎡ 이상의 큰 규모일 필요까지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대규모의 공장은 주거지역에 이익보다는 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단서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대상에 주거지역에 설치된 연면적 500㎡ 이상인 이 사건 변전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변전소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천분의 5'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3. 가.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년경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 '주거지역 내에 있는 변전소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이 1천분의 5인지 및 공동시설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위 부서는 '관계법령에 의할 때 변전소는 공장에서 제외되므로 재산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 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분 공동시설세의 경우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임'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회신의 내용은 피고가 아닌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의 견해표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는 1989년부터 이 사건 개정전 단서를 거쳐 2016년경 이 사건 개정후 단서가 도입된 이후까지 그 개정 경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 변전소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왔다. 이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이 사건 변전소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온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변전소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3. 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변전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광열

판사 이지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목 록

귀속연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2년	1,447,970원	289,590원	1,737,560원
2013년	1,414,680원	282,930원	1,697,610원
2014년	1,474,430원	294,880원	1,769,310원
2015년	1,789,590원	357,910원	2,147,500원
2016년	1,784,810원	356,960원	2,141,770원
합계	7,911,480원	1,582,270원	9,493,75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관계법령[3)]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인바, 이 사건 처분의 각 그 과세기기준일부터 현재까지 지방세법령의 개정은 행정자치부령이 행정안전부령으로 변하는 등에 그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현행 법률을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2. 건축물

나. 특별시 ·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 특별자치시(읍 · 면지역은 제외한다) · 특별자치도(읍 · 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 · 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 · 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별표2]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01 전기업

4010 전기업

4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에 한정한다)

2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5(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기타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착수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② 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112조제4항"은 각각 "법 제188조제2항"으로 본다.

제78조의7(공장용건축물의 범위)

영 제139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당 · 휴게실 · 목욕실 · 세탁장 · 의료실 ·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 · 무기고 · 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3]

공장의 종류

2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01 전기업

4010 전기업

4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에 한한다)

28.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27호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 내지 마목 및 아목은 법 제112조제3항 및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법 제188조·영 제139조 및 규칙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